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 고지서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2024.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047호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4항,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 등 사항을 고지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047 손해배상(기)

○ 원 고 1. 김희동

(대표당사자) 2. 강홍수

3. 조문기

4. 임여정

5. 박경동

6. 장일경

원고(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박원곤

○ 피 고 1.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김영진, 윤혜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이혁, 김상철, 윤지효, 김경수, 박용휘

2. 강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남재현, 표정률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상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이하 'STX조선해양'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2013. 3. 21.부터 2014. 2. 6.까지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3. 판결의 주문

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대표당사자)들이 부담한다.

4. 청구취지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강덕수는 공동하여 원고(대표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66,747,628,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이 사건 2024. 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판결의 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제45기(2011 회계연도) 및 제46기(2012 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였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제45기(2011 회계연도) 및 제46기(2012 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따라서 위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STX조선해양의 이사였던 피고 강덕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

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인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성원들이 위 각 사업보고서 및 각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위 각 사업보고서 및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각 사업보고서 및 각 감사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허위 기재나 기재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STX조선해양의 경영 상태와 관련하여 '장부를 실제보다 좋게 꾸미기도 했다'는 내용의 2013. 12. 11. 및 2013. 12. 30.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한국거래소가 2014. 2. 6. STX조선해양의 자본전액잠식설에 대하여 조회공시 요구를 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한 점, 그 무렵 STX조선해양 일부 주주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던 점,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가능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46기(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감사보고서가 2014. 3. 21. 공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성원들은 늦

어도 2014. 3. 21.에는 위 각 사업보고서 및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누락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집단소송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과한 2015. 3. 27.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6. 유의 사항

가.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나.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승원

